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주요개정 내용

전기용품안전관리법

-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장애 관련 방지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안전인증하던 것을 민간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토록 함
-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형식승인별 인증에서, 선진외국과 같이 모델별로 인증
- 수입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국내 수입판매업자와 외국제조업체에 하던 것을 외국제조업체에 한정하여 안전인증
-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외의 전기용품에 대하여도 제조업체 요구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
 - TV 등 172 품목 : 강제인증
 - 1,000V 이하 전기용품 : 임의 인증
- 벌칙강화
 -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기용품 : 징역 2년 이하 1,000만원 → 징역 2년 이하 2,000만원
 - 부적합한 전기용품 안전인증한 자 : 500만원 → 1,000만원
 - 허위보고 : 과태료 200만원 → 50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

제2조(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형식승인을 받은 1종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
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봄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규정 적용